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56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의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윤준병 · 위성곤 · 양부남

김문수 · 이성윤 · 박홍배

김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 · 벤처투자회사 · 상업기업 · 국내복귀 우수인력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 3, 제85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③ · ④ (생 략)</p> <p>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p>
<p>1. · 2.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